학생복지위원회규정

제정 : 2011.05.01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4.07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명칭) 본회는 학생복지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에 설치하는 학생복지 및 편의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>

제3조(운영방침) 본 위원회는 재학생들이 복지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한다.

제4조(조직)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 : 입학학생취업처장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2. 위 원 : 교무처장, 사무처장, 학과교수 4명, 행정직팀장 4명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대표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5조(소위원회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(재적위원 중에서)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6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시책 및 운영 방법 결정
2. 복지시설 설치와 폐지에 관한 심의
3. 복지행정에 관한 제 소청 처리
4. 복지위원회 규정 개정사항 심의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7조(회의소집) 본 위원회의 모임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.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8조(의결)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그러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사무처리) ① 본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교무학생처 학생팀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>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지문제는 학생복지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